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양권석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이 조례안은 2009년 4월 2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5월 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부동산 경기침체 및 주택가격 하락으로 재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완화를 위해 지방세법이 개정('09. 2. 6)됨에 따라, 공동시설세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세율을 인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세율구간별로 각각 0.01%P 인하(안 59조제1호)

과 세 표 준	세 율
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4
1천3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5
2천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6
3천9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8
6천4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1.0
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가액	1000분의 1.2

4. 검토의견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6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시설세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세율구간별로 각각 0.01P 인하 하는 것임.

개정 지방세법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5%P상승함.

이에 따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공동시설세의 부담이 증가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율을 인하 하고자 하는 것임.

우리도 공동시설세 '08년 부과액 177억원 대비 13.1%인 23억원의 징수감소는 예상되나, 공정시장가액의 5%P 상승과 기업유치 등 건축물의 증가로 실질적인 세수감소는 없을 것으로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인하하는 것에 다른 의견은 없음.

붙임 :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